



제 1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도전과 과제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전망과 과제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

김 찬 문화재청 차장님,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님, 임돈희 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먼저 이번 회의에 기조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이며 유네스코 대표로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달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를 계기로 마침내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원회 회기 동안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록 등재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모범 프로그램, 보호활동 지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협약이 발효된 후 첫 3년 동안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 기반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가 자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2003년 협약의 탄생을 간략하게 상기한 후,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

까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차 정부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약 이행의 첫 주기가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수준으로 고양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윤리적 명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살아 있는, 그래서 재생 가능한 보물로서 문화다양성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물은 문화적 차이라는 이름으로 유산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인류의 존속을 보장하고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과 배치되는 인종차별과 근본주의를 지양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년 후인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어 표현과 전통들을 이들 간의 위계적인 구분을 두지 않고 동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오늘날 생활양식과 세계화 과정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살아 있는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따라서 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규범 중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주요 규범중 하나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03년 협약과 그 메커니즘을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협약의 몇 가지 필수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목록 체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보호 활동과 모범 사업을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협약은제 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네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해당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문화유산 존중을 보장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상호존중 보장 및 국제협력과 원조 제공

우리는 종종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만큼이나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학문적 용어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형유산과 비교하여 정의하거나 명확한 설명이나 범주 안에서 객관적인 정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광의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다(제2조 1항).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동체와 연행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의 유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1972년 협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이 2003년 협약에서는 제외된 이유이다.

외부인이나 전문가를 이러한 유산의 증인 또는 지지자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과학적으로 무엇이 무형유산이고 무형유산이 아닌지 결정할 수는 있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유산과는 매우 다르다. 모든 공동체나 집단에게 각각의 무형유산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동체의 유산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간 전승되고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반드시 생산과 유지 및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끔 공동체 내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무형유산이 버려지기도 하나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생의 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형유산처럼 모든 무형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유지되거나 무형유산에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이고 동시대적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유산이면서, 반드시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과 도시에서 연행되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한 실연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화를 발전과정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전형적이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자 한다.

협약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공동체가 열려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꼭 특정 영토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자신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정의 및 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해

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유산을 창조, 재창조, 유지, 전승하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용어는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는데 있어 두드러지는 역할을 한다(제2조3항). 이는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상의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 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협약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협에 처한 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더 높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을 만들었다.

이 두 개의 목록과 함께 협약은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사업 목록(*Register*)을 제정했다. 이 목록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호 조치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이 메커니즘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동체가 다른 나라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보호수단을 그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당사국들은 이와 같은 세 목록에 공동 등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내용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는 경계가 없고 다행히도 사람들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이동하여 강과 산, 바다에 정착한다. 때때로 그들이 원래 사는 곳보다 훨씬 먼 곳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이동시키기도 한다.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동체가 처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특히 무형문화유산기금을 통해 보호활동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6월 총회에서 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이 제정됨에 따라 첫 번째 협약 이행 주기가 시작되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열린 일련의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이 마련된 운영지침은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을 시행하는 데

구체적인 틀이 되고 있다. 2008년 6월 시작되어 16개월 간 시행된 첫 번째 주기는 2009년 9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 및 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모범사업 선정과 함께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된 15개 유산 중 12개 유산에 대해서는 등재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자들의 등재 신청서 심사 작업 발표 및 심사자와 위원회 간의 질의응답 시간 후, 12개의 신청유산 모두 목록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무형유산보호 모범사업 목록과 관련하여 5개의 신청서를 받았고, 이 중 3개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 목록에 오른 첫 번째 3개의 모범사업이 되었다.

무형유산 대표목록에는 111개의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76개가 심사기구에 의해서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2008년 11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목록들과 모범사업 목록을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 *Subsidiary Body*를 만들었다. 이 기구의 역할은 당사국들이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올리기 위해 제출한 등재신청유산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등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다.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의장을, 케냐가 서기를 맡고 있으며, 멕시코, 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작업이 향후 협약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에 착수했다.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는 제기된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 중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심사보조기구는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 등재 신청 준비과정에서 공동체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염원을 표명했다. 또한, 공동체의 동의는 유산 보호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앞서 필자가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 무엇이 무형문화유산인지 아닌지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외부 전문가가 아니고(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확인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 자신이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는 심사기구가 제안한 운영지침 수정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등재신청 첫 해 상당한 양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재 신청서 심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던 중 심사기구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당사국이 제출하는 연간 등재신청유산의 수에 상한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보조기구는 첫 번째 운영지침을 채택할 때 당사국들이 국가적 수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등재유산 수 제한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으나, 협약 이행의 첫 주기인 이번처럼 매년 방대한 수의 등재신청유산을 심사하는 것은 표면 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보조기구가 등재신청유산을 검토하는 작업과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들을 심사하는 작업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주제를 나누었다. 다수의 당사국들이 제한의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등재유산 수의 제한은 대표목록의 정신을 저해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내부적 문제를 양산하며, 공동체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간위원회는 당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개방적인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만들었다. 이 워킹그룹은 정부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초안 결정(4.COM19)을 제출했다. 본 초안은 2010년 6월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간위원회는 심사보조기구와 위원회가 두 번째 주기에 새로이 제출된 147개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조치의 하나로 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현재 등재된 유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숫자만 등재시킨 당사국이 제출한 유산과 공동등재 신청한 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동등재에 대한 강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후 심사보조기구는 사무국이 2010년 주기 심사를 위해서 147개 신청건수 중 물리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50여개의 신청서만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정부간위원회는 의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의 회의 중 23개 의제 전부를 성공적으로 다루었고, 차기 위원회 사무국 채택과 차기 위원회 개최 장소를 케냐 나이로비로 결정하며 막을 내렸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 마지막 날 참석하여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무형유산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인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협약의 첫 운영 주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제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유네스코를 떠나지만, 이 협약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이 틀림없다.

오늘날 2003년 무형유산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대다수가 비준한 상태이다(2009년 9월 17일 현재 116개국 가입). 협약의 비준이 이런 추세로 이어진다면 이 협약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첫 번째 등재 심사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이 지나온 여정을 반추해 보고 협약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아부다비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놀라운 결과가 있다면 긴급보호목록과 무형유산 대표목록 간의 극명한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6월, 협약 이행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채택하면서 당사국은 협약의 첫째 목적은 변형, 소멸,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긴급보호목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의 첫 심사과정 시기에 유네스코의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15개에 불과했고, 반면 대표목록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111개였다. 이러한 눈에 띄는 불균형이 의미하는 바는 당사국들이 유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등재심사과정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의 주목 덕분에 무형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무형유산들이 소멸 직전에 있거나 긴급 보호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협약의 주요 목표인 무형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국들이 세계유산협약 하의 목록 체계의 영향을 받고, 특히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국은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만들고 주목을 끌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은 지진과 같은 외부적 위협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적절한 운영방식의 부재와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세계유산을 등재할 시 일종의 경고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특정 유산이 등재되는 것이 항상 당사국에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목록에서 긴급성이라고 함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회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위험 유산 사례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사국의 목록 등재신청은 영토내 무형문화유산과 긴급 보호에 대한 책임

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심사과정 중 유네스코는 긴급보호목록에 대해서는 소수의 등재신청을 받았을 뿐이고 이는 첫 번째 심사과정보다 더 적은 수이다. 우리는 당사국들에게 긴급보호목록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하고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과 대등한 수준으로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 하도록 이들을 설득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의 극명한 지리적 불균형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목록은 세계적 시각에서 볼 때 ‘대표적’이라고 하기 거의 어렵다. 다음의 수치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해준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 중 등재된 76개의 유산과 2008년 이 목록에 통합된 90개의 유산 중 아태지역의 유산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에 무형문화유산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해석을 낳기까지 했다. 아태지역에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무형유산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처럼 많은 유산들이 목록에 등재된 이유가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이 생성되기 훨씬 전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다. 국가들이 유네스코 목록에 무형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이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못지 않게 잘 알려져 대표목록등재가 개별 국가의 모든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과제는 지방에서 혹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착수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들의 합리적인 균형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목록 간 혹은 목록 내 균형을 만드는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당면과제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간의 연계 문제이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2004년 아마토 선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기초가 된다. 2003년 협약이 세계유산협약의 상호보완적인 훌륭한 협약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두 협약 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논의를 전개하기 바란다. 몇 주 전 폐회한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 본 협약은 상호보완성과 유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일부 윤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무형유산이 목록에 등재된 일부 공동체의 경우 이미 언론보도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물론 언

론이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언론노출은 특정 문화유산과 그들의 연행 공동체에 대해 남용을 유발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들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언론의 대상이 아니라 언론 콘텐츠의 행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유산을 기록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길 바란다.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접근성에 대한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정보 흐름의 증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무형유산에 비밀 혹은 신성한 특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해당 유산을 지배하는 문화 양식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번 회의 같은 국제포럼이나 컨퍼런스가 무형유산 접근에 있어서 문화 양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소통하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인터넷, 디지털 신기술 덕분에 현재 세계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혁명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네트워크의 증가가 다양한 정부, 전문가, NGO의 참여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유산의 연행 공동체의 참여도 촉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공동체들이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활발한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 사회로 향한 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태지역에 새로이 설립되는 무형문화유산정보네트워킹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형유산이 세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형유산이 현 세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끝없는 전망들을 본다. 많은 무형유산의 표현이 국경 너머에서 발견된다는 단순한 사실은 서로 간에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모범사업에 대한 목록이 개발되면, 이것이 국가 상호간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진정한 의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무형유산 보호는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연행자인 공동체에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태적 결

속을 촉진할 뿐 만 아니라, 현 세계에 수많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든지 보다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닦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무형유산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재등록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보다 관련성 있고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인류역사에 걸쳐 주요 방해 요인은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 해소되어 왔다. 무형유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이 협약의 주역인 무형유산 연행자들에서부터, 시민사회와 특히 지역 공동체와 정부 간의 간극을 메우는 주요 행위자인 NGO의 중추적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협약이 두 번째 심사주기로 나아감에 따라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협약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고 싶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이 소멸됨에 따라 2003년 협약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이 협약이행을 위한 어떤 조치든 항상 무형유산의 생명력 유지와 세계문화다양성의 파수꾼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만 한다.